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2306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강락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김도준

변론 종결2023. 12. 21.

판결 선고2024.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30,81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2024. 3.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의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순번1 계약을 제1계약, 순번2 계약을 제2계약, 순번3 계약을 제3계약이라 한다).

1	2019. 4. 16.	FRP 물탱크 2개 보수	17,600,000원
2	2019. 5. 3.	수영장 FRP 방수	99,000,000원
3	2019. 5. 29.	FRP 물탱크 2개 설치,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 수영장 트렌치 설치	29,590,00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2, 3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4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91637(본소), 2012다91644(반소)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 E는 제1계약에 기한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고, 제2계약에 기한 공사는 시행되었으나 여러

곳의 마감이 미비하고, 슬라이드가 있는 대형 및 소형 수영장 2개소 중 소형 수영장 부분의 경우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후 타일이 부착되어야 함에도 타일이 부착된 후 방수공사가 이루어져 부적절하며, 제3계약에 기하여 FRP물탱크 2개 및 사다리, 수영장 트렌치 방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¹⁾되나, FRP물탱크에 보강재가 미설치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시공으로 판단되고,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의 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없는데,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계약에 기한 공사가 완성되었고, 제2계약에 기한 공사 중 슬라이드가 있는 소형 수영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제3계약에 기한 공사 중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계약에 관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합계는 10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원고와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위 슬라이드가 있는 대형 및 소형 수영장 부분의 공사대금이 1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에 관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은 9,016,697원($= 10,800,000\text{원} \times 90,000,000\text{원} / 107,800,000\text{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중 대형 수영장 부분의 공사대금은 4,508,349원($= 9,016,697\text{원} \div 2$, 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2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은 적어도 94,040,817원($= 85,491,652\text{원} (= 90,000,000\text{원} - 9,016,697\text{원} + 4,508,349\text{원}) \times 110\%$)으로 판단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계약에 관한 견적서 1면(갑 제4호증 중 2면)에 기재된 FRP 자재, 매트, 겔코트, 부자재는 제1계약에 따른 FRP 물탱크 보수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자재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가 온수탱크를 공장으로 이전하여 보수하는 내용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견적서 1면 중 인건비 생산공(공장) 부분도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견적서 1면 중 인건비 조립공(현장조립)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²⁾과 우레탄 보온재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³⁾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FRP 물탱크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제3계약 공사대금 중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대금은 26,290,000원[= 29,590,000원 - 3,300,000원(= (2,200,000원 + 800,000원) × 1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7,930,817원(= 제1계약 17,600,000원 + 제2계약 94,040,817원 + 제3계약 26,29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45,500,000원을 공제한 92,430,816원(= 137,930,816원 - 4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제2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슬라이드가 있는 소형 수영장 부분에 이미 설치된 타일 위에 방수공사를 하였고, 제3계약과 관련하여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를 하는 등 제2계약 및 제3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2, 3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수급한 공사에 타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슬라이드가 있는 소형 수영장의 타일 위에 방수공사를 한 것은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타일공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타일 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제3계약에 따라 설치한 물탱크에 파이프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제3계약의 공사를 미완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3계약의 공사에 파이프 등 급수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제2계약에 기한 공사는 마감 미비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4)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일부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가 위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비용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항변을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재민

- 1) FRP물탱크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은 설치된 물탱크에 FRP 방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물탱크에 FRP 방수공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2) 위 인건비 조립공(현장조립) 비용 중 상당 부분은 FRP물탱크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액 또는 그 중 특정액이 FRP물탱크 설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은 없다.
-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지하 기계실 온수탱크 보수공사에 관한 것이다(2023. 6. 7. 자 준비서면 9, 10면 참조).
- 4) 피고는 명시적으로 상계항변을 하거나 특정한 금액의 하자보수비용 공제 등 상계항변으로 해석될 주장을 하지 않았다.